

#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유엔協約’의 適用範圍

韓 圭 植\*

- 
- I. 序 論
  - II. 人的 適用範圍
  - III. 物的 適用範圍
  - IV. 時間的 適用範圍
  - V. 空間的 適用範圍
  - VI. 結 論
- 

## I. 序 論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유엔協約’(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라 한다)은 國際物品賣買에 각국의 서로 다른 實定法을 통일하여 하나의 國際統一賣買法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서로 다른 法體系를 통일하는 작업은 오랜 기간을 요구했고 CISG의 토대가 된 ‘國際物品賣買에 관한 統一法’(A Convention relating to a Uniform Law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ULIS’라 한다)과 ‘國際物品賣買契約의 成立에 관한 統一法’(A Convention relating to a Uniform Law on the Formation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ULF’라 한다)의 死藏이라는 試行錯誤도 겪게 하였다. 또한 필연적으로 각국의 利害關係 對立으로 인한 妥協의 結果로 만들어진 규정도 있다. 그러나 CISG가 賣買契約이 성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法的 問題와 당사자일방의 契約違反時 상대방에 대한 救濟方案을 일관성

---

\* 釜山經商大學 貿易科 助教授.

있게 제시하여 국제무역에 法的 安定性과 豫測性을 제고한 것은 그 의의가 무척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CISG는 國際貿易의 새로운 法規範인 만큼 그 解釋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CISG는 國際物品賣買契約을 규율하고 있으나 모든 國際物品賣買契約에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즉 CISG는 그 適用範圍에 특정한 제한이 있다. 첫째, 人的 適用範圍로 CISG는 특정한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에만 적용된다. 둘째, 物的 適用範圍로 CISG는 특정한 거래에만 적용된다. 셋째, 時間的 適用範圍로 CISG는 특정한 기간에 체결된 계약에만 적용된다. 넷째, 空間的 適用範圍로 CISG는 특정한 영역에서 체결된 계약에만 적용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CISG의 적용범위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II. 人的 適用範圍

어떤 物品賣買契約이 CISG의 適用을 받으려면 특정한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에만 적용된다. 매매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要件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國際性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즉 당사자의 營業所가 서로 다른 國家에 있어야 한다(제1조 제1항 제1문). 이를 基本的 適用이라고 한다. 둘째, 당사자의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가 모두 締約國인 경우이거나(제1조 제1항 a호), 또는 國際私法이 어느 한 締約國의 法律을 적용하게 하는 경우이어야 한다(제1조 제1항 b호). 이를 制限的 適用이라고 한다.

### 1. 基本的 適用

CISG가 적용되는 物品賣買의 國際性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貿易과 그 성격이 다르다. CISG에서 國際性이란 당사자쌍방의 ‘營業所’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sup>1)</sup> 이러한 CISG의 國際性에 관하여 다

1) CISG에서 營業所란 國際私法에서 의미하는 連結點(connecting factor)이라 볼 수 있다. 連結點에 관해서는 張文哲, 國際私法總論, 弘文社, 1996, pp. 120~123. 참조; 廣江健司, 國際取引における國際私法, 國際書院, 1995, pp. 76~77. 참조.

음의 두 가지 事例를 제시한다.<sup>2)</sup>

<事例 1> 韓國에 주재하고 있는 S 기업은 美國 LA에 17인치 PC 모니터 5,000 대를 보유하고 있다. S기업은 이 모니터를 미국 LA에 주재하고 있는 B 기업에게 판매하려 한다. 그러면 이 매매는 CISG에서 의미하는 國際性을 지니고 있는가.

이 사례에서 物品이 國제적으로 이동되지 않고 미국 내의 한 지역에서 매매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기업은 한국에 營業所가 있고 B기업은 미국에 營業所가 있으므로 양 기업은 서로 다른 나라에 營業所를 두고 있다. 따라서 物品의 國際的 移動은 없지만 CISG가 의미하는 國際性을 지니고 있다.

<事例 2> 韓國에 소재하고 있는 S 기업은 美國 LA에 17인치 PC 모니터 5,000 대를 보유하고 있다. S기업은 이 물품을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B기업에게 판매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매매는 CISG에서 의미하는 國際性을 지니고 있는가.

이 사례는 <事例 1>과 달리 물품이 美國에서 韓國으로 이동되었을지라도 S기업과 B기업 모두 韓國에 그 營業所가 있다. 따라서 양 기업 모두가 동일한 나라에 營業所가 있기 때문에 CISG가 의미하는 國際性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다.

CISG를 이렇게 國際性을 지닌 物品賣買契約에 한정하는 것에 관하여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오늘날의 매매는 國內賣買와 國際賣買의 구별이 명확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ISG의 適用을 國際賣買에 한정하는 것은 모든 나라가 국내매매에 自國法이 아닌 國際統一賣買法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성 있는 유일한 방법은 國際賣買에만 統一賣買法을 적용하고, 國內賣買에는 國內法을 적용하게 하는 것이다.<sup>3)</sup>

2) Paul Volken, “The Vienna Convention: Scope, Interpretation, and Gap-filling”, *International Sale of Goods*, Dubrovnik Lectures, Sarčević, P. & Volken, P., Editors, Oceana Publications, Inc. New York, 1986, pp. 26~27.

3) John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2 ed.,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Deventer,

다음은 만약 당사자일방이 둘 이상의 營業所를 서로 다른 국가에 가지고 있는 경우 어느 營業所를 CISG에 의해 적용되는 營業所라고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있다. CISG에는 “해당 매매의 營業所라 함은 契約의 체결전 또는 체결시에 당사자쌍방에게 알려졌거나 예상되었던 상황을 고려하여 契約 또는 그 履行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場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 10 조 a 호).<sup>4)</sup> 그러나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場所’가 무엇인지는 CISG에 의해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혹은 그것에 대하여 CISG에 一般原則도 없으므로, 이는 補充法의 問題로 보고 각국의 國際私法에 의하여 해당하는 國內法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sup>5)</sup>

본 규정에서 특히 모호한 점은 ‘契約 또는 그 履行’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소이다. 둘 이상의 營業所 중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場所는 계약이 체결되는 장소와 그 契約이 이행되는 장소에 따라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도인과 매수인이 A 국에서 계약을 교섭하고 체결하였다. 그리고 매도인은 또 다른 營業所를 가지고 있는 B 국에서 이를 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또한 CISG에 의해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혹은 CISG에 一般原則도 없으므로, 이는 補充法의 問題로 보고 각국의 國際私法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sup>6)</sup>

한편 어떤 國際賣買가 유효하게 성립하여 CISG에 적용되는 경우 당사자가 營業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할 때는 어느 곳을 營業所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CISG는 “당사자의 ‘常居所’(habitual residence)를 營業所로 참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 10 조 b 호). 그러나 契約의 체결 전 또는 체결 시 당사자 사이에 성립한 契約이나 어떤 去來, 또는 당사자가 밝힌 情報에서도 당사자가 다른 國家에 그 營業所를 가지고 있다는 事實이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제 1 조 제 2 항). 여기에서 문제되는 점은 常居所의 개념이다.<sup>7)</sup> 이 용어는 CISG 제 24 조에도 언급되

Boston, 1991, pp. 8~9.

4) 複數連結點이 있는 경우, 즉 둘 이상의 營業所를 가지고 있는 경우 契約 및 그 履行과 ‘가장 密接한 關係’가 있는 營業所를 우선하도록 하였다.

5) Jerzy Rajska, “Place of business”,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C.M. Bianca & M.J. Bonell eds., Giuffré, Milan, 1987, p. 119.

6) *Id.* p. 119.

7) CISG에서는 常居所란 개념을 營業所의 補充的인 連結點으로 사용하고 있다. 張文哲, 前揭書 52, 120~122쪽 참조 ; 常居所란 事實의 狀況을 나타내는 用語이므로 순수한 法律用語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事實的 狀況에 관하여 서로 다른 견해가

어 있지만 그 정의는 없으며, ULIS와 ULF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CISG에서 常居所에 대한 개념은 계속 거주할 意思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客觀的인 確信이 가능한 만큼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場所라고 이해된다.<sup>8)</sup>

## 2. 制限的 適用

人的 適用範圍은 우선 당사자의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가 모두 締約國인 경우이거나 또는 國際私法이 어느 한 締約國의 法律을 지정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그러나 어떤 국제매매가 國際性을 지니고 있고 國際私法이 어느 한 締約國의 法律을 적용할지라도, 그 締約國이 이에 구속받지 아니한다고 宣言한 경우에는 CISG가 적용되지 아니한다(제 95 조).<sup>9)</sup>

國際物品賣買에서 紛爭이 발생하였을 때 그 準據法으로써 어느 나라의 法律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야기된다. 해당 사건이 CISG에 적용되는지 혹은 그렇지 않는지에 따라 賣買當事者의 義務와 그 救濟方案이 달라지게 되므로 당사자쌍방에게 아주 민감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制限的 適用은 그 多樣性과 複雜性으로 인하여 학자들 사이에서도 論難이 많으나 다행히 간단한 세 가지 規則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sup>10)</sup>

規則 1 : 當事者 雙方의 國家가 締約國 또는 留保國인 경우, 본 협약이 適用된다.

規則 2 : 當事者 一方의 國家라도 非締約國이고 그리고 法廷地의 國際私法이 締約國의 法規를 따르는 경우, 본 협약이 適用된다.

規則 3 : 當事者 一方의 國家라도 非締約國이고 그리고 法廷地의 國際私法이 留保國 또는 非締約國의 法規를 따르는 경우, 본 협약이 適用되지 않는다.

있다. 일부 학자는 常居所를 결정하는 유일한 基準은 상당한 기간동안 실제로 존재하는 客觀的 事實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다른 학자는 常居所가 어떤 場所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客觀的 事實에 추가하여 그곳에서 계속居住하려는 意思를 가지고 있는 主觀的 事實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De Winter, "Nationality or Domicile? The Present State of Affairs", Recueil des cours of th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Vol. CXXVIII, 1969, p. 429 참조.

8) Rajski, *op. cit.*, pp.119~120.

9) 1999년 8월 20일 현재 CISG에 加入한 57개 국가 가운데 제 95에 의하여 留保를 宣言한 국가는 중국, 체코,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미국 등 5개국이다. Pace Law School Institut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Sept. 16, 1998, <<http://cisgw3.law.pace.edu/countries/cntries.html>>.

10) 拙稿, "비엔나 協約(CISG)의 適用上의 基本原則에 관한 小考", 貿易商務研究, 第 10 卷, 韓國貿易商務學會, 1997年 2月, 139~146 쪽 참조.

이에 추가하여 CISG는 禁治產者, 限定治產者, 未成年者, 契約의 行爲無能力者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에 대해 各國의 國內法이 규율한다. 또한 代理人과 그 法的 權限에 관한 문제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CISG는 자신의 行爲에 책임 있는 당사자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sup>11)</sup>

다음은 제 95조 留保條項을 두게 된 배경과 留保宣言을 한 국가의 실익을 검토해 본다. CISG의 기초가 된 ULIS와 ULF에는 營業所가 상이한 국가의 영역에 있는 당사자간에 체결된 物品賣買契約 및 物品賣買契約의 成立에 적용된다고 각각 규정하여(ULIS 제 1조 및 ULF 제 1조), 어떤 국제매매에서 매매당사자가 國際性의 要件만을 충족시키면 ULIS 또는 ULF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양국이 모두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그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점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ULIS와 ULF에는 이 협약을 적용하는 데에 國際私法의 規則은 배제된다고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ULIS 제 2조 및 ULF 제 1조 제 9 항).

그러나 이 협약들의 適用範圍를 넓히기 위한 이와 같은 ‘普遍主義的 法適用方法’은 특정 법을 타국에 강제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많은 국가들에게서 받게 되었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CISG에서는 國際性의 要件에 추가하여, 당사자의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가 모두 締約國인 경우이거나(제 1조 제 1항 a 호) 또는 國際私法의 規則이 어느 한 締約國의 法律을 적용하게 하는 경우이어야(제 1조 제 1항 b 호) 본 협약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사실 제 1항 b 호는 제 1항 a 호에서 양국이 모두 締約國인 경우에만 CISG가 적용되는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양국이 모두 締約國인 경우 CISG에 적용되는 것은 본 협약 제정의 주요목적인 法的 安定性 提高에 적절하다. 이에 반해 國際私法의 規則에 의해 어느 한 締約國의 法律에 따르는 경우에 CISG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매매당사자가 法廷地의 國際私法을 일일이 검토하여야 하므로 본 협약의 적용을 보다 복잡하게 할 수 있다. 1980년 외교회의에서 이러한 논의를 거듭하여 결국 제 95조 留保條項을 두게 되었다.

어떤 국가가 제 95조에 근거하여 유보선언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각국의

11) B. Nicholas, "Loss after risk has passed",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C.M. Bianca & M.J. Bonell eds., Giuffré, Milan, 1987, pp. 483~484.

法的·經濟的 利益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이 留保條項은 國際賣買에 각국의 서로 다른 實體法을 통일하여 하나의 國際統一法으로 適用範圍를 확대하려는 본 협약의 목표에 상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締約國은 非締約國에 비해 CISG에 대해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非締約國과 분쟁시에도 CISG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유보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반해 유보선언을 함으로써 상대방 국가가 非締約國일 경우 동등하게 CISG에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法 適用의 衡平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留保國은 非締約國과 분쟁시 自國法 適用可能性이 있으므로 자국에서 紛爭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는 유보하는 것이 이익이다. 貿易收支의 黑子를 시현하고 있는 국가도 유보를 선언하여 非締約國과의 매매에 자국의 경제적 우위를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게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보를 선언하였다.<sup>12)</sup> 첫째, 제 1 항 a 호에 의한 CISG의 適用與否는 명백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나, 제 1 항 b 호에 의한 適用與否는 國際私法의 規則에 의존하므로 불안정적이다. 왜냐하면 國際私法은 불확정적이며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제 1 항 b 호에 의해 CISG가 外國法보다는 國內法인 美國法을 대신하여 적용되는 경우가 더욱 많을 것이다. 제 1 항 b 호는 締約國인 미국당사자(유보를 선언하지 않을 경우)와 非締約國當事者의 去來에만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당사자와 비체약국당사자의 분쟁시 國際私法이 美國法을 지정하는 경우 CISG가 美國法을 대신 적용하게 된다. 만약 美國法이 국제매매에 심각히 부적절하다면 CISG가 규정하고 있는 國際統一賣買法의 規則을 美國法에 대신 적용하는데 이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UCC가 제공하는 賣買法은 상당히 현대적이며 국제매매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를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美國과는 달리 中國은 對外經濟契約에 自國法을 적용하도록 공개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므로 유보를 선언하였다.

---

12) 이는 미국 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가 미국 정부에 제 95 조 유보선언의 필요성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American Bar Association, "Proposed United States Declaration under Article 95 Excluding Applicability of the Based on Article 1(1)(b)", Nina M. Galston & Hans Smit eds., Matthew Bender, 1984, pp. App. I - 27~28.

### III. 物的 適用範圍

CISG는 特定한 物品의 賣買契約에만 적용된다. 이를 物的 適用範圍라고 한다. CISG의 物的 適用範圍는 ULIS를 담습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CISG는 물론 ULIS에도 ‘賣買契約’과 ‘物品’에 대한 정의가 없다.

‘契約’이라는 용어는 CISG 제 30 조와 제 53 조를 목시적으로 참조할 수 있다.<sup>13)</sup> CISG는 “매도인은 계약과 CISG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物品을 인도하여야 하고, 이에 관련된 모든 書類를 交付하여야 하며, 또한 物品에 대한 所有權을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 30 조), “매수인은 계약 및 CISG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物品代金을 지급하고 物品을 수령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제 53 조).

CISG에 적용대상이 되는 ‘物品’은 대부분 一般材이나, 통상의 물품에 포함하기 곤란한 것은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CISG가 배제되는 去來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特定 去來形態에 따라 그 適用이 배제된다. 이러한 去來形態를 그 성질로 보아 去來의 性質 및 物品의 性質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 매수인이 資材의 주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매도인이 노동 또는 서비스 대부분을 공급하는 경우 그 適用이 배제된다. 셋째, CISG는 物品으로 인하여 발생한 어떠한 者의 死亡 또는 身體的인 傷害에 대한 매도인의 責任, 즉 人的損害에 관한 製造物責任은 규율하지 아니한다.

#### 1. 去來의 性質에 따른 適用排除

첫째, 個人用, 家族用 또는 家事用으로 구입되는 物品의 賣買, 즉 消費者賣買에 관해서는 CISG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契約의 締結前 또는 締結時에 物品이 그러한 용도로 구입된 사실을 매도인이 알지 못하였거나 또는 알았어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제 2 조 a 호). ULIS에서는 消費者賣買를 배제하는 規定이 없었으나, CISG에서 이를 새로이 제정하였다. 그 理由는 國際賣

13) Volken, *op. cit.*, p. 33.

買에서 消費者가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흔하지 않고 또한 一般消費者的 購買行爲까지 고도의 전문적이고도 기술적인 CISG를 적용한다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CISG에서는 이를 배제하였다.<sup>14)</sup>

CISG의 지배적인 주제는 商慣行과 貿易慣習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되는 契約의 役割이다. 많은 나라에서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제정한 國內消費者保護法은 國際商去來를 위한 統一賣買法과 마찰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CISG는 각국의 消費者保護法이 본 협약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의도하고 있으며<sup>15)</sup> 이러한 消費者保護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CISG는 消費者購買의 適用을 배제하였다.

매매당사자에게 消費者賣買에 관하여 紛爭이 발생하는 경우 CISG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자 立證責任이 부과된다. 즉 어떤 賣買가 消費者賣買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매도인은 물품이 消費者賣買用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입증하여야 하는 責任이 있는 반면, 매수인은 그것이 개인용, 가족용 또는 가사용으로 구입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責任이 부과된다.<sup>16)</sup>

또한 UNIDROIT 原則도 消費者賣買를 배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국가가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立法體系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들 법은 商事法과는 다르다.<sup>17)</sup>

둘째, 競賣에는 CISG가 적용되지 아니한다(제 2조 b 호). 이 조항 역시 ULIS에서 동일한 규정이 없고, CISG에서 새로이 제정되었다.<sup>18)</sup> 競賣에서 매수인의 신분이 사전에 밝혀지지 않는다. 入札에 성공한 뒤에는 그의 營業所의 所在地가 매도인에게 알려져야 하더라도 競賣가 끝날 때까지 매도인은 어떤 매수인이 구매하게 될지 알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 의존하여 國際統一賣買法을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競賣는 당사자가 契約에서 CISG를 적용하도록 합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sup>19)</sup>

셋째, 強制執行 또는 기타 法律上の 權限에 의한 賣買는 CISG가 적용되지

14) 崔峻璣, 國際去來法 第2版, 三英社, 1997, p. 135.

15) 内田 貴·曾野裕夫譯, 國際統一賣買法, 商事法務研究會, 1997, p. 16.

16) Honnold, *op. cit.*, p. 51.

17) M.J. Bonell, *An International Restatement of Contract Law*, Transnational Juris Publications, Inc., Irvington, New York, 1994, pp. 33~36.

18) 1970년 UNCITRAL 작업부는 이 규정을 처음 논의하여 CISG에 자연스럽게 포함하였다. UNCITRAL, YB II, U.N. Doc. A/CN.9/SER.A/1971 참조.

19) *Id.*

아니한다(제 2 조 c 호). 본 조항은 ULIS의 규정에서 押留를 삭제하고는 동일하다.<sup>20)</sup> 押留란 용어는 普通法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CISG에서는 이를 제외하였다.<sup>21)</sup> 法律上의 權限에 의한 賣買는 해당 매매가 일어나는 國家의 國內法에 의하여 法院의 強制的 節次에 의한 매매를 말하므로 각 국가마다 서로 다르다.<sup>22)</sup> 또한 強制執行 또는 기타 法律上의 權限에 의한 賣買는 많은 國가에서 特別法 또는 强行法規에 의해 규율되므로 CISG의 적용이 배제되었다.<sup>23)</sup>

## 2. 物品의 性質에 따른 適用排除

첫째, 株式·持分·投資證券·通貨의 賣買는 CISG의 適用이 배제된다(제 2 조 d 호). 본 규정은 ULIS의 규정과 동일하다.<sup>24)</sup> CISG에서 物品賣買란 有體動產의 賣買를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株式·持分·投資證券·通貨는 無形資產이므로 CISG의 적용이 배제되었다. 국가에 따라서는 CP(무담보 기업어음; commercial paper) 및 金融商品을 물품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들의 매매를 CISG의 適用範圍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CISG가 규정한 物品의 適合性에 관한 조항에서도 이러한 物品賣買는 고려하지 않았다.<sup>25)</sup> 그러나 物品引渡를 지배하는 書類, 예를 들어 船貨證券이나 倉庫證券은 物品引渡의 效果를 부여하는데 사용되므로 CISG에 적용된다.

둘째, 船舶·浮船·水上飛行船·航空機의 賣買는 CISG의 適用이 배제된다(제 2 조 e 호). 본 규정과 상응하는 ULIS 규정의 差異點은 ULIS에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要件으로 登記를 전제로 하고 있다.<sup>26)</sup> 그러나 CISG에서는 상기 물품의 登記與否에 관계없이 그 적용이 배제된다. 어떤 국가의 國內賣買

20) ULIS 제 5 조 d 호.

21) Honnold, *op. cit.*, p. 56.

22) W. Khoo, "Exclusions from Convention",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C.M. Bianca & M.J. Bonell eds., Giuffré, Milan, 1987, p. 38.

23) Fritz Enderlein & Dietrich Maskow, *International Sales Law,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New York, Oceana, 1992, p. 35.

24) ULIS 제 5 조 a 호.

25) Khoo, *op. cit.*, p. 38.

26) ULIS 제 5 조 제 1 항 b 호: ULIS는 登記를 전제로 하는 船舶, 浮船 또는 航空機의 賣買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法에서는 선박, 부선 및 항공기가 물품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CISG에서는 이들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이러한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였다. CISG가 水上飛行船을 적용배제한 이유는 이것이 船舶인지, 浮船인지 또는 航空機인지를 문제시할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sup>27)</sup> 또한 이러한 物品의 賣買는 많은 국가에서 不動產賣買에 포함하며 특별한 登錄要件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CISG에서는 動產의 賣買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不動產에 준하는 賣買에 CISG가 적용되는 것을 배제하였다.<sup>28)</sup>

셋째, 電氣의 賣買는 CISG의 適用이 배제된다(제 2 조 f 호). 본 규정은 ULIS 제 5 조 c 호와 동일하다. 電氣는 量의 側面으로 보면 有形財이지만 電波의 側面으로 보면 無形財이기 때문에 電氣의 賣買를 배제하여 이 매매가 물품매매인지에 관한 불필요한 論爭을 제거하였다.<sup>29)</sup> 그러나 가스의 매매는 포함하였다. 왜냐하면 가스의 단위는 특정된 벌크화물의 양, 예를 들어 'tank #5' 또는 'tanker Hanjin sailing November 1' 등의 표현으로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 3. 主要資材 및 서비스 供給에 대한 適用排除

#### (1) 買受인이 主要資材를 供給하는 경우

매수인이 主要資材를 공급하는 경우 CISG의 適用이 배제된다. 즉 物品을 주문한 당사자가 그 製造 또는 生產에 필요한 資材의 主要한 部分(a substantial part of the materials)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CISG가 적용되지 아니한다(제 3 조 제 1 항).

여기서 논란이 되는 점은 과연 '主要한 部分'이 어떠한 재료에 대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主要한 部分에 관하여는 CISG에서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그것이 費用을 의미하는지, 價格을 의미하는지 또는 價值를 의미하는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는 필요한 자재의

27) Khoo, *op. cit.*, p. 37.

28) Jacob S. Ziegel, *Report to the Uniform Law Conference of Canada on the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iversity of Toronto, Ottawa, July 1981, p. 38.

29) Honnold, *op. cit.*, p. 104.

주요한 부분을 매수인이 공급하도록 한 경우는 당사자가 '主要한 部分'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한편 資材의 總價值와 비교하여 '實質的 價值'를 가지고 있는 기술서비스 또는 노하우를 매수인이 제공하는 경우는 CISG에 적용된다. 왜냐하면 제3조 제2항에서 勞動 또는 기타 서비스를 매도인이 공급하는 경우에만 CISG에 의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엔나 회의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전문적 서비스에 비중을 둔 去來를 배제하자는 안이 거부된 사실로도 이를 알 수 있다.<sup>30)</sup>

## (2) 賣渡人이 서비스를 提供하는 경우

매도인이 노동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去來는 CISG의 適用이 배제된다. 즉 물품을 공급하는 當事者의 義務 중에서 大部分(the preponderant part)이 노동 또는 기타 서비스를 공급하는 契約에 CISG가 적용되지 아니한다(제3조 제2항).

여기에서 '노동 또는 기타 서비스'는 기계류와 같은 物品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노동이나 기술자문서비스를 의미하며,<sup>31)</sup> 物品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物品製造에 필요한 勞動費用은 해당하지 아니한다.<sup>32)</sup>

덧붙여 상기의 매수인이 資材의 '主要한 部分'을 공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노동 또는 기타 서비스의 '大部分'이 어느 정도인지가 論難이 된다. '大部分'이라는 개념은 '主要한 部分'과 마찬가지로 CISG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고, 費用을 의미하는지, 價格을 의미하는지, 또는 價值를 의미하는지를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가 필요한 자재의 주요한 부분을 매수인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主要한 部分'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는 노동, 또는 기타 서비스의 공급이 매도인의 義務의 主要한 部分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意味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大部分'은 '主要한 部分' 보다는 크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sup>33)</sup>

---

30) UNCITRAL, *op. cit.*

31) Honnold, *op. cit.*, p. 107.

32) UNCITRAL, YB VIII, U.N. Doc.A/CN.9/128, Annex I, 1977.

33) Enderlein & Maskow, *op. cit.*, p. 37.

#### 4. 製造物責任에 의한 適用排除

근래에 들어 각국의 國內法은 消費者의 權利를 침해하는 契約條件의 效力を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法律의 대부분은 ‘消費者去來’ 또는 ‘製造物責任’에 중점을 두고 있다. CISG는 각국의 消費者保護法과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그 適用範圍을 제한하고 있다.<sup>34)</sup> CISG에서는 “物品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어떤 者의 死亡 또는 身體的인 傷害에 대한 매도인의 責任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 5조). CISG의 適用對象에 製造物責任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消費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消費者去來를 배제하고 있는 것(제 2조 a호)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제 5조에서는 特定 去來가 CISG에 의하여 규율되나 이 거래에서 야기되는 人的 傷害에 대한 責任을 부과하는 請求權은 배제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問題를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sup>35)</sup>

첫째, ‘個人用, 家族用 또는 家事用’으로 구입되는 物品일지라도 매도인이 ‘그러한 用途로 구입된 事實을 알지 못하였거나 또는 알았어야 하지 않은 경우’에는 CISG가 적용된다. 그러나 매각된 물품이 소비자거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매도인이 알았던 경우라도 ‘死亡 또는 身體의 傷害에 대한’ 매수인 또는 제 3자의 請求權은 CISG에서 배제되므로 適用可能한 國內法에 의하여 규율된다.

둘째, ‘個人用, 家族用 또는 家事用’으로 구입되지 아니한 物品이 ‘死亡 또는 身體의 傷害’를 야기하였다면 그에 따르는 損害賠償을 청구할 수 없다. 만일 產業用 機械가 구매자의 종업원을 다치게 했을 경우 구매자가 그 다친 종업원 때문에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損害賠償 請求權은 CISG에 의하여 규율되지 아니한다.

---

34) Honnold, *op. cit.*, p. 119.

35) *Id.* pp. 119~120.

## IV. 時間的 適用範圍

CISG의 時間的 適用範圍에는 CISG 자체에 대한 國際的 效力發生時期, 個別去來에 대한 CISG의 效力發生時期, CISG 廢棄의 效果 등이 포함된다. CISG의 時間的 適用範圍는 각 국가와 관련한 규정이므로 제4편 最終規定(Final Provision)에 명시되어 있다. 그 반면 CISG의 人的·物的·空間的 適用範圍는 계약당사자와 직접 관련한 규정이므로 제1편 適用範圍에 명시되어 있다.<sup>36)</sup>

### 1. 國際的 效力發生

CISG에는 “열 번째로 批准書, 承諾書, 承認書 또는 加入書가 UN 사무총장에게 寄託된 날로부터 12개월을 경과한 후 이어지는 다음 달의 최초 일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제99조 제1항).<sup>37)</sup> 따라서 1986년 12월 11일 열 번째 비준서, 승낙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UN에 寄託되어 1988년 1월 1일부터 CISG 자체가 國제적으로 발효하게 되었다.<sup>38)</sup>

CISG가 발효한 이후 “CISG의 批准書 또는 加入書를 寄託한 국가는 그러한 書類가 寄託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이어지는 다음 달의 최초 일에 그 적용을 받게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제99조 제2항). 이에 의해 1999년

- 
- 36) Peter Winship, "The Scope of the Vienna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International Sale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Nina M. Galston & Hans Smit eds., Matthew Bender, 1984, p. 1~53.
  - 37) 批准(承諾 또는 承認)이란 CISG의 署名國이 이를 批准(承諾 또는 承認)하여, 그에 의해 적용받는 것을 말한다(제91조 제2항). 加入이란 非署名國이 CISG를 가입하여 그에 의해 적용받은 것을 말한다(제91조 제3항). 추가하여 CISG에는 ‘承繼’에 의한 加入方法이 있다. 예를 들어 Czechoslovak은 Czech와 Slovak으로 분리되어 독립하면서 양국이 CISG를 承繼하였다. Slovenia와 Bosnia-Herzegovina는 Yugoslavia에서 독립하여, 유고가 CISG에 가입한 것을 承繼하였다. Albert H. Kritzer, *Guide to Practical Applicat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nd ed.,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Deventer, Boston, 1994, p. 709.
  - 38) 여기에 해당하는 國家는 아르헨티나, 중국, 이집트, 프랑스, 헝가리, 이태리, 레소토, 시리아, 미국, 유고, 잠비아 등이다. 미국, 중국 및 이태리는 1986년 12월 11일 UN에 동시에 批准書를 기탁하였다. UNCITRAL, Status of Conventions, <<http://www.un.or.at/uncitral/status/index.htm#TO>>.

8월 20일 현재 國際的으로 效力이 발생하는 국가는 57개국에 달한다.

그러나 “ULF 또는 ULIS의 締約國은 ULF 또는 ULIS의 效力이 정지될 시점까지 CISG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제 99조 제 3항~제 6항). ULF와 ULIS의 締約國中 이태리,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및 룩셈부르크 5개국은 CISG의 締約國이 되면서 각각 UN에 ULF 및 ULIS의 廢棄通知를 하였다.<sup>39)</sup> 따라서 이들 국가에 대하여는 ULF 및 ULIS의 效力이 정지하고 CISG가 적용된다.<sup>40)</sup>

## 2. 個別的 效力發生

締約國이 國제적으로 CISG에 의해 적용받는 시기는 특정 賣買去來가 개별적으로 적용받는 시기와 구별되어야 한다. 우선 個別賣買契約은 매매당사자의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가 모두 締約國인 경우이거나 또는 國際私法이 어느 한 締約國의 法律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CISG에 적용된다. 그리고 계약 성립에 관한 규칙은 CISG가 유효하게 된 이후에 契約締結을 위한 提議가 행하여진 경우에만 적용된다(제 100조 제 1항). 그렇지만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CISG의 적용은 매매당사자의 營業所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가 모두 締約國이거나 또는 國際私法이 어느 한 締約國의 法律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하며, CISG가 관련국가에 유효하게 된 이후에 체결되는 契約에만 한정된다(제 100조 제 2항). 이는 ‘時際法(經過規定)의 問題에 遷及效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原則을 CISG에서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包括契約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sup>41)</sup>

<事例 2-3> 당사자의 국가가 CISG에 가입하기 전 양당사자는 수년간의 販賣店契約을 체결하였다. CISG에 규율되기 이전에는 양당사자가 지정한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販賣店契約에 의하여 物品購買를 규율하는 法律을

39) UNCITRAL, *op. cit.*

40) ULF와 ULIS는 네덜란드 정부에 批准書 및 加入書를 제출 후 6개월 후에 그 效力이 발생한다(ULF 제 8조 제 2항, ULIS 제 10조 제 2항). 그 반면 廢棄通知를 한 경우에는 1년 후에 그 效力이 정지한다(ULF 제 10조 제 2항, ULIS 제 12조 제 2항).

41) Kritzer, *op. cit.*, p. 704.

결정하는 데에는 어떠한 문제도 야기되지 않았다. 이제 그 국가가 CISG에 가입하게 되면 남은 契約期間에 주문하는 物品은 國內法에 의해 적용되는지 또는 CISG에 의해 적용되는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사례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CISG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매매당사자는 契約書에 어떠한 法規를 적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3. 廢棄의 效果

CISG 廢棄의 效果 또한 效力發生과 마찬가지로 12개월의 경과를 전제하고 있다. 즉 체약국이 UN에 書面通知를 寄託한 날로부터 12개월을 경과한 후 이어지는 다음 달의 최초 일에 그 效力이 발생한다(제 101조 제 2항). 그러나 CISG의 效力發生에 관한 規定과는 달리 廢棄를 선언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관한 規定이 없다.<sup>42)</sup>

첫째, CISG에 의하여 契約이 성립하였으나 그 이후 당사자의 營業所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가 CISG를 廢棄宣言한 경우에도 CISG가 계속 적용될 수 있는지, 둘째 CISG의 國際的 效力發生時期와 個別的 效力發生時期가 동일한 날짜에 정지되는지, 셋째 현재 訴訟中인 契約은 CISG에 적용되는지 또는 적용 가능한 國內法에 적용되는지 등의 문제이다.

이들은 限時法(intertemporal law)의 문제이며 CISG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法院은 이에 관한 國內法을 援用하여야 한다.<sup>43)</sup>

## V. 空間的 適用範圍

CISG는 特定한 領域內에서 적용된다. 이러한 空間的 適用範圍는 人的 適用範圍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sup>44)</sup> 즉 人的 適用範圍의 基本的 適用과 같이 매매당

---

42) Volken, *op. cit.*, p. 33.

43) *Id.* p. 33.

사자의 营業所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어야 한다. 또한 制限的 適用과 같이 당사자의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가 모두 締約國이거나, 또는 國際私法에 의하여 어느 한 締約國의 法律에 적용되어야 한다.

CISG의 空間的 適用範圍에는 時間的 適用範圍의 制限的 適用에 추가하여 聯邦國家(federal states)와 관련한 특정한 제한이 있다.<sup>45)</sup> 연방국가는 각州 또는 領이 契約法을 立法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는 독일, 스위스, 유고, 미국, 영국, 캐나다, 덴마크, 오스트리아,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이들 국가가 CISG에 가입하는 것은 聯邦次元에서 뿐만 아니라 연방의 각州 또는 領도 立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立法節次는 시간낭비를 초래한다. 따라서 CISG에는 “締約國이 그 憲法에 의하여 CISG가 취급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이한 法體系가 적용되는 둘 이상의 領域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締約國은 署名, 批准, 承諾, 承認 또는 加入 당시에 CISG를 領域全體 또는 그 중 하나 이상의 一部領域에만 적용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 93조 제 1 항).<sup>46)</sup>

한편 CISG의 空間的 適用範圍에는 地域共同體(regional cooperation)와 관련한 특정한 제한이 있다. 地域共同體에서 이루어지는 국가간의 經濟的 · 法律的 協力은 域外 國家에 비해 보다 互惠의이다. CISG는 이러한 地域共同體의 特性을 약화하기보다는 더욱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CISG는 “본 CISG가 규율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와 동일하거나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法規를 두고 있는 둘 이상의 締約國은 당사자쌍방이 이들 체약국에 营業所를 갖고 있는 경우의 賣買契約 및 그 成立에 대하여 CISG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언제라도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은 締約國이 共同으로 또는 互惠主義를 조건으로 하여 일방적으로 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제 94조 제 1 항). 또한 “CISG가 규율하는 사항에 관하여 하나 이상의 非締約國과 동일하거나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法規를 두고 있는 締約國은 당사자쌍방이 이들 해당 국가

44) *Id.* p. 16.

45) *Id.* p. 30.

46) 제 93조에 의하여 宣言한 國家는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등이다. 호주는 Christmas Island, Cocos(Keeling), the Ashmore 및 Cartier Islands. 덴마크는 Faroe Islands와 Greenland, 뉴질랜드는 Cook Islands, Niue 및 Tokelau에는 CISG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CISG Database, “Countries that have adopted the CISG and information on its status and application”, *Pace Law Schoo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March 1998. <<http://www.cisgw3.law.pace.edu/cisg/countries/entries.htm>> 참조.

에 營業所를 갖고 있는 경우의 賣買契約 및 그 成立에 대하여 CISG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언제라도 선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 94 조 제 2 항).<sup>47)</sup>

## VII. 結論

이상과 같이 CISG의 적용범위를 특정한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에만 적용되는 人的 適用範圍, 특정한 거래에만 적용되는 物的 適用範圍, 특정한 기간에 체결된 계약에만 적용되는 時間的 適用範圍 및 특정한 영역에서 체결된 계약에만 적용되는 空間的 適用範圍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어떤 국가가 CISG에 가입할 때 人的 適用範圍에 관한 留保(제 95 조) 그리고 CISG의 空間的 適用範圍에 관한 留保(제 93 조 및 제 94 조)를 임의로 선언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空間的 適用範圍에 관한 留保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人的 適用範圍에 관한 留保에 관하여는 그 實益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제 95 조에 의하면 당사자일방이 非締約國인 경우 소송이 발생하여 法庭地의 國際私法이 締約國을 지정하면 CISG에 적용되나 留保國을 지정하면 CISG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본 留保條項은 國際賣買에 각국의 서로 다른 實體法을 통일하여 法的豫測性과 安定性을 증대하려는 CISG의 制定目的에 상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상대방 국가가 CISG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떤 국가가 締約國일지라도 상대방과 동등하게 CISG에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法適用의 衡平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締約國은 非締約國은 비해 CISG에 대해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非締約國과 분쟁시에도 CISG를 적용하는 것이 그 만큼 유리하다. 留保國은 非締約國과 분쟁시 自國法 適用可能性이 있으므로 자국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는 유보하는 것이 이익이다.

우리 나라는 國家政策으로 世界化를 지향하고 貿易量 또한 세계 12 위라는 外形에 미루어 보아 좀 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CISG에 가입하더라고 제 95 조를 유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47) 제 94 조에 의하여 CISG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및 스웨덴) 사이의 貿易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들 국가간에는 그들의 統一賣買法이 적용된다.

## 參 考 文 獻

- 廣江健司, 國際取引における國際私法, 國際書院, 1995.
- 內田 貴・曾野裕夫 譯, 國際統一賣買法, 商事法務研究會, 1997
- 張文哲, 國際私法總論, 弘文社, 1996.
- 崔峻璣, 國際去來法, 第 2 版, 三英社, 1997.
- 韓圭植, “비엔나 協約(CISG)의 適用上의 基本原則에 관한 小考”, 貿易商務研究, 第 10 卷, 韓國貿易商務學會, 1997 年 2 月.
- Bonell, M.J., *An International Restatement of Contract Law*, Transnational Juris Publications, Inc., Irvington, New York, 1994.
- Enderlein, F. & Maskow, D., *International Sales Law,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New York, Oceana, 1992.
- Honnold, J. O.,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2 ed.,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Deventer, Boston, 1991.
- Khoo, W., “Exclusions from Convention”,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C.M. Bianca & M.J. Bonell eds., Giuffré, Milan, 1987
- Kritzer, A. H., *Guide to Practical Applicat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nd ed.,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Deventer, Boston, 1994
- Nicholas, B., “Loss after risk has passed”,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C.M. Bianca & M.J. Bonell eds., Giuffré, Milan, 1987.
- Rajska, J., “Place of business”,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C.M. Bianca & M.J. Bonell eds., Giuffré, Milan, 1987.
- Volken, P., “The Vienna Convention: Scope, Interpretation, and Gap-filling”, *International Sale of Goods*, Dubrovnik Lectures, Šarčević, P. & Volken, P., Editors, Oceana Publications, Inc. New York, 1986.

- Winship, P., "The Scope of the Vienna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International Sale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Galston, N. M. and Smit, H., Editors, Matthew Bender, 1984.
- De Winter, "Nationality or Domicile? The Present State of Affairs", *Recueil des cours de l'Académie de droit international*, Vol. CXXVIII, 1969.
- Ziegel, J.S., *Report to the Uniform Law Conference of Canada on the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iversity of Toronto, Ottawa, July 1981.
- American Bar Association, "Proposed United States Declaration under Article 95 Excluding Applicability of the Based on Article 1(1)(b)", Nina M. Galston & Hans Smit eds., Matthew Bender, 1984.
- Pace Law School Institut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Sept. 16, 1998,  
[<http://cisgw3.law.pace.edu/countries/cntries.html>](http://cisgw3.law.pace.edu/countries/cntries.html).

## ABSTRACT

### The Sphere of Applicability of the CISG

Han, Kyu Sik

The CISG has been legislated for playing roles as uniform rules which gover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job of getting unification of the diverse domestic legal systems required almost half century of work.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Convention some rules resulted from compromises of nation's relevant interests. The Convention, however, promoted both the legal certainty and harmonization in international trade in that the uniform rules suggest the appropriate resolution to the legal problems in the course of concluding a contract as well as in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This paper focuses systematically on the scope of applicability of the CISG. The Convention deals with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However, it does not apply to all kinds of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CISG confines the sphere of applicability to a certain type of sales. First of all, the CISG is limited to those contracts having been concluded between a particular group of persons, which is called a personal aspect of applicability. Secondly, the CISG covers a specific category of sales, which is called a material aspect of applicability. Thirdly, the CISG are concluded within a particular period of time, which is called a temporal aspect of applicability. Lastly, the CISG is limited to contracts falling within a given territorial sphere, which is called a territorial aspect of applicability.

Key Words : CISG, Sphere of Applicability